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60737] [www.standingsteak.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6.08.0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1.20.]

[스탠딩스테이크]

정 보 공 개 서

(주)올굳에프앤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올굳에프앤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 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 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 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27, 1차203호 (춘의동,서림테크노파크1)]

[전화: 032-653-5379] [팩스: 070-7966-5379]

[담당부서 가맹본부: 032-653-537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첨부자료]

첨부1 - 재무제표

첨부2 _ 물품공급내역서

첨부3 - 가맹점리스트

첨부4 - 가맹점 순회 점검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	주 소					
(_)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27, 1차203호(춘의동,서 림테크노파크1)					
㈜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올굳에프앤비 	2023.08.07.		2023.08.01.	윤나라,고경진	032-653-5379 070-79		070-7966-5379	
	법인등록번호 11011		1-8709854	사업자등록번호		480-	86-02815	

[&]quot;당사는 ㈜백삶 에서 ㈜올굳에프앤비로 영업표지를 인수하였습니다.(2023.09.2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01.01	01171	스탠딩스테이크 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27, 1차203호(춘의 동,서림테크노파크1)			
임원	윤나라	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나라,고경진	032-653-5379	070-7966-53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01.01		스탠딩스테이크 외	경기도 부천시 원 [[] 동,서림테크노파크	기구 부천로 198번 1)	길27, 1차203호(춘의	
임원	고경진	스탠딩스테이크 외 2개	경기도 부천시 원 동,서림테크노파크 대표자	기구 부천로 198번 1) 대표전화번호	길27, 1차203호(춘의 대표팩스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백삶	미미족 외 2개	2023.09.26	경기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8,8층 1,2,3호(당정동,군포센트럴비즈파크)	김기봉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의 영업권을 인수함					

- 가맹본부인 (주)올굳에프앤비가 (주)백삶의 영업표지를 인수한 사항입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스탠딩스테이크]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스탠딩스테이크	의자 없이 서서먹는 스테이크 전문점 컨셉으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와 나이프를 남녀가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함.
상 호	스탠딩스테이크 OO점	
상표(서비스표)	STANDING ¶ STEAK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0-2017-0002097(2017.12.15.)
광 고	STANDING STEAK FISHCRIPS GRIED STEAK GRIED STEAK BANARA FRIED	 간판 및 사인물 등에 활용 포장패키지 및 취식도구 활용 메뉴 픽토그램 메뉴판 및 메뉴보드에 활용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_	-
2022년	-	-	1	-	-	-
2023년	023년 78,383		33,763	89,791	35,833	32,76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3년 09월에 해당 브랜드를 인수하였으며 브랜드별 가맹사업 매출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1)의 매출액 총액으로 대체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J 7101	사업경력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TH AL CH		2022.12.01 ~ 2024.07.30	㈜환공어묵베이커리 공동대표	사업 총괄			
관련 임원	윤나라	· 다라 대표이사	2023.08.01 ~ 2024.07.30	㈜에스앤큐플러스 대표이사	사업 총괄			
			2023. 08. 07 ~ 현재	(주)올굳에프앤비 대표이사	사업 총괄			
가맹사업	71 11 11 01		2022.12.01 ~ 2024.07.30	㈜환공어묵베이커리 공동대표	사업 총괄			
^{가영사합} 고경전 관련 임원	고경진	대표이사	2023.08.07 ~ 2024.09.30	㈜올굳에프앤비 사내이사	가맹사업 총괄			
			2024. 10. 01 ~ 현재	(주)올굳에프앤비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원구(당)
2023년 12월 31일	2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올굳에 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3.09.26.~현재	미스터보쌈5379(등록번호: 2012010057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올굳에 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3.09.26.~현재	스탠딩스테이크(등록번호: 20160737)이라는 영업표지의 양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올굳에 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3.09.26.~현재	미미족(등록번호: 2021487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스탠딩스테이크 STANDING∬STEAK (상표권)	영업표지 사용	2017.01.05.출원 2017.12.15.등록	출원 40-2017-0002097호 등록 제40-1313672호	(주)올굳에 프앤비	2027.12.15.
스테이크 마리네이드 용 조성물	제품사용	2016.11.10.출원	출원 제10-2016-0149516호	(주)올굳에 프앤비	2036.11.10.
및 이의 제조방법		2018.07.05.등록	등록 제10-1877353호	(*권리이전 진행중)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사업 현황

1. [스탠딩스테이크]을 시작한 날:

- (주)백삶 : 2016년 6월 21일

- (주)백삶 :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8월 3일

- (주)올굳에프앤비 : 2023.09.26 영업권 인수

2. [스탠딩스테이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푸디아	스탠딩스테이크	김기봉	2016.06.21.~2017.03.2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6-1 2층
(주)푸디아	스탠딩스테이크	김기봉	2017.03.21 ~ 2021.09.3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386
(주)백삶	스탠딩스테이크	김기봉	2021.10.01 ~ 2022.11.2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386
(주)백삶	스탠딩스테이크	김기봉	2022.11.21~2023.09.25	경기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38, 8층 1,2,3호
(주)올굳에프앤비	스탠딩스테이크	윤나라	2023.09.26.~2024.06.3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31, 비동 2층(신당동, 종하빌딩)
(주)올굳에프앤비	스탠딩스테이크	윤나라, 고경진	2024.07.01~현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27, 1차203호(춘의동,서 림테크노파크1)

3. [스탠딩스테이크] 업종

영업표지	업종				
A 511 51 A 511 OL 7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탠딩스테이크 	서양식	스테이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0	50	-	25	25	-	10	10	-
서울	15	15	-	9	9	-	4	4	-

부산	2	2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5	5	-	1	1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2	2	-	1	1	-	-	-	-
세종	-	-	-	-	-	-	-	-	-
경기	9	9	-	4	4	-	1	1	-
강원	-	-	-	1	1	-	1	1	-
충북	3	3	-	2	2	-	-	-	-
충남	5	5	-	3	3	-	1	1	-
전북	-	-	-	-	_	-	-	_	-
전남	4	4	-	2	2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4	4	-	2	2	-	2	2	-
제주	1	1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7	10		7	2	50
2022	50	3		28	2	25
2023	25			15	1	10

6. [스탠딩스테이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下世	6오/이금	6 비표시	등록번호	но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올굳에 프앤비	미스터보쌈 5379	20120100570	한식	71/0	44/0	23/0	
가맹본부	(주)올굳에 프앤비	스탠딩스테이크	20160737	양식	50/0	25/0	10/0	
가맹본부	(주)올굳에 프앤비	미미족	20214870	한식	-	9/1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 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마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7100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0	132,994	8,415	400,192	18,168	41,243	2,412	10곳
서울	4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1							
강원	1							
충북	-							
충남	1							
전북	-							
전남	1							
경북	-							
경남	2							
제주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x 추정비율(3.0배)]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2%~36%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올굳에프앤비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스탠딩스테이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개	2,02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탠딩스테이크]과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용(단위: 천원, 미포함)	부가세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37 <u>C</u> 87 <u>C</u>	(비공개)	29,496	गृह् (धस्या)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국민은행	약수역 종합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1길 3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은행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상단 우측의 "기업"메뉴에서 기업서비스 선택 ->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점사업자 -> 가맹예치금 예치 -> 이용약관 동의 -> 가맹본부 조회 후 (주)올굳에 프앤비(사업자번호: 480-86-02815)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 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시	장조사비	1,100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 이전에	1.가맹사업자의 일방 적 계약해지 2.조사 착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물건조사, 점포조사, 영업현황조사 등
;	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즉시	역언 개시	1.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2.가맹사업자의 일방적 인 계약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
최초교육비	매뉴얼 지도 개점전 교육 현장 지원	4,400	계약체결 후 즉시		1.교육시작 50% 경과시점 반환불가 2.교육시작 50% 경과 이전 50% 환불 3.가맹점 교육에 따른 선지급 비용	

[※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 당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14,000	
시장조사비	1,100	
가입비	5,500	
최초교육비	4,4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4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² 기준)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9,270	3,927			*점포임대비용 제외
주방장비 (후드공사)	협력업체 (협력업체)	11,000	1,100	공사 완료		냉장고, 냉테이블, 고기숙성고 그릴, 간텍기, 후드공사 등
인테리어 (간판공사)	협력업체 (협력업체)	22,000	2,200	후 1일 이내 (계약금 50%)	공사 전 계약취소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외부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익스테리어	협력업체	4,400	440	3070)		

(간판/파사드)	(협력업체)					
주방집기	협력업체 (협력업체)	1,078	108	물품 공급 전 선불	상품 미공급시	집기류, 기타주방기물
POS	협력업체 (협력업체)	792	79	입금	비중묘시	POS 1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는 **추가공사**는 제외되었 습니다.]

[**추가공사:** 철거공사, 덕트외부입상공사, 소방공사, 냉난방기공사, 화장실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등]

[당사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도면 제공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2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의 협력업체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상담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당사 담당자와 가맹희망자 최적의 입지 도출 → 당사 담당자와 가맹희망자 타당성 검토 → 가맹희망자 입지확정 → 점포확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의 점포입지 선정을 위한 당사 담당자의 타당성검토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점포입지 선정주체는 가맹희망자이므로 가맹희 망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추정투자비용, 추정매출액, 추정매출손익 분석자료 등)
	※ 매장개설 기준 (권장)
	1) 매장전면 5m 이상
	2) 매장평수 39.6m² 이상 (실면적기준)
	3) 편도 2차선 이상 도로변으로 입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아닐 것
7000100	국과성용에 즐러시표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의 고용 및 근무금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납부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		POS 매출금액의 4.4%	정산 후 10일 이내 납부	반환하지 않음		월 2회 정산
광고분담금	(주)올굳에프 앤비	행사별로		반환하지 않음		
판촉분담금	겐미	분담		반환하지 않음		
보수교육비		1,100	교육 실시 7일 이전	반환하지 않음	필수교육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요청시
모바일상품권 [※]	대행업체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POS사용료	협력업체	소모품 및				*유료소모품

	(협력업체)	A/S비용 (변동가능)			및 비용 A/S 발생시
POS프로그램 사용료	협력업체 (협력업체)	22/월	매월 대금청구 (후불)	반환하지 않음	
환경개선비					41page 참조
지연이자		연 12%			

※ 로열티는 후불형식이므로 금전으로 반환하지 않음.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는 매월 가맹점 승인금액의 일부로 차감 후 지급됨.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당사는 제3자 물류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서비스관리	가맹점의 고객서비스 실태 점검	분기별 1회	문의: 가맹본부 (02-653-5379)
위생관리	가맹점의 위생관리 점검 및 교육	분기별 1회	문의: 가맹본부 (02-653-5379)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 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스탠딩스테이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올굳에프앤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 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스탠딩스테이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2-물품공급내역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별 구분이 불가능하여 당사 총 경제적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부채살스테이크 덮밥/박스/치즈볼박스			
등심스테이크 덮밥/박스/치즈볼박스			
채끝스테이크 덮밥/박스/치즈볼박스			
돈목살스테이크 덮밥/박스/치즈볼박스			
함박스테이크 덮밥/박스/치즈볼박스	왼쪽에 기재된	1회 위반: 구두 경고	
커플세트 A,B,C	이외의 제품을 협의 없이 판매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2022년 4월 현재 기준
패밀리세트A,B,C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E-11 - 1E
토마토/크림 파스타세트			
와사비치킨			
순살치킨박스			
비어박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ᅵᅥᆀᄼᄓᇻᇚ먿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등심스테이크(덮밥/박스)	14,900 / 16,900		
채끝스테이크(덮밥/박스)	14,900 / 16,900		
부채살스테이크(덮밥/박스)	14,900 / 16,900		
돈목살스테이크(덮밥/박스)	10,500 / 12,400		
함박스테이크(덮밥/박스)	9,900 / 10,900		
등심스테이크(치즈볼박스)	19,900		
채끝스테이크(치즈볼박스)	19,900		
부채살스테이크(치즈볼박스)	19,900	월별로 공문으로 공지	2022.4월 현재기준
돈목살스테이크(치즈볼박스)	15,400	0/1	
함박스테이크(치즈볼박스)	13,900		
커플세트(A/B/C)	27,300/28,300/31,300		
패밀리세트(A/B/C)	38,400/39,400/42,400		
와사비치킨	17,400		
순살치킨박스	14,000		
비어박스	19,8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조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범위 	가맹본부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테이크 메뉴의 음식 판매	스탠딩스테이크	없음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지역내의 가구수는 2만 세대 내외 당 1점포로 한다. 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쌍방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수상권(백화점,마트,시장,지하상가,공항,호텔 등)은 행정구역 및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로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매정사업자에게 서명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 ->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스탠딩스테이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을 바꿔 점포를 이전할 경우, 선 폐점 조치 후 개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단, 점포 소멸 후 **6개월 이내 개점**할 경우에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5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 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제42조 제1항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해지 사유 1. "을"이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을"이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을"이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 하는 경우 4. "갑"이 제공하는 식자재, 매장유니폼, 간판 및 매장 내 홍보물, 전단지 등 브랜드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매뉴얼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갑"이 제공한 메뉴의 매뉴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6.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7. 고객이 합리적인 이유로 제기하는 불만사항에 대하여 "을"이 그 시정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게을리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8. 제19조 교육 및 훈련 관련한 의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제1항 제32조 제2항
8. 제19조 교육 및 훈련 관련한 의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9.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0
10. "을"이 "갑"과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2. "을"이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TII 42 T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3조 제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	

- 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장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에 대한 고시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48조
○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	제3항
속할 수 없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힌 기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힐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653-537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명의변경 절차는	교육수료 및
명의변경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의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최초교육비 지급

경우 1) 법적관계인 배우자간 2) 계약서에 명시 된 동업자간 3) 사업자의 직계 존비속간 4)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될 경우			동일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스탠딩스테이크]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스탠딩스테이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4:00	연중 무휴 (명절 휴무 예외)	문의: 가맹본부 (02-653-537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주방, 홀, 배달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점주의 부재시
3명 이상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경영주 포함한 인력으로 산정함.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청결/위생 (12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성	앙/월		
운영관리 (8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실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성	상/월	각 지역 담당 슈퍼바이저	
서비스 (11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or 전화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 이성	앙/월	및 QM	
매뉴얼관리 (1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성	앙/월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올굳에프앤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 관하게 됩니다. <% 첨부4-가맹점 순회점검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스탠딩스테이크]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1 4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교급 길에	-1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협의사항	총매출액비 율에 따라 (협의사항)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국 행사)	
개별 행사	행기	사에 따라 딜	<u></u>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광고 및 판촉활동의 내용 및 광고물에 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삼백만원(₩3,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2-14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 문서제공		
1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4(1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 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 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열함이나 열리 등일성의 통일성의 통일성의 주기하기 정상적인 영업에 주는 경우 경우	용 O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무관하게 가맹	포환경개선 : 20% O점포의 확 장 또는 이 전을 수반하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분할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부담액의 40%)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 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전단지, 유니폼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5~7일간 (별도협의)	별도규정	
판촉지원	배달APP내 메뉴 할인 진행	가맹점 원칙 준수	연 12회 이하	판촉액의 50%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및 매뉴얼 준수여부 확인	가맹본부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담당 SV가 가맹점을 방문 → 경영 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공문으로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본부 (02-653-5379)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본부 (02-653-5379)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판매활성화 경영지원	배달APP 메뉴할인행사	매뉴얼 준수매장	1년 12회	판촉액의 50%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스탠딩스테이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교육	회사 소개/브랜드소개 매뉴얼교육(조리,서비스,배달) 직영점 OJT교육 POS 사용 및 영업관리교육 오픈매장 지원교육	집단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교육	신메뉴에 대한 매뉴얼교육 컴플레인 발생 가맹점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실습교육	가맹본부 소집요구시	대상가맹점 의무화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스탠딩스테이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교육	현장교육포함 최소12일	4,400	최초 계약시 이수 교육인원 2명 이상
보수교육	1일	1,100	슈퍼바이저 및 가맹점 자체요구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9조 제8항에 따라 1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032-653-537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mrbossam.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 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2 - 물품공급내역서]



[첨부3 - 가맹점리스트]



